



국민권익위원회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한나라
대한민국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개정된 ?공익신고자 보호법? 시행 예정 안내(공공단체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위원회는 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공익신고자 보호·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?공익신고자 보호법?을 소관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확대(현행 284개→개정 467개)하는 내용의 개정된 ?공익신고자 보호법?이 2020.5.19. 공포되어 2020.11.20. 시행될 예정입니다. 공익신고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법률들을 알려드리니, 각 기관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셔서 향후 공익신고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?공익신고자 보호법? 제6조제5호,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에 따라 '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', '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'는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함

- 붙임: 1. 공익신고자 보호법(현행) 1부
 2. 공익신고자 보호법(시행예정) 1부
 3.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및 공익신고기관 목록 1부.
 4.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자료 1부. 끝.

국 민 권 익 위 원 회 위



수신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외 107 건

전결 05/20

행정사무관

전인혜

보호보상정책과장

박혜경

협조자

시행 보호보상정책과-747 (2020-05-20) 접수 감사관실-64 (2020.5.22.)

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(국민권익위원회, / www.acrc.go.kr
법제처)

전화 044-200-7752 전송 044-200-7948 / jih1201@korea.kr / 공개
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. 내 삶이 달라집니다.